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1년 03월 19일

호문동장 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안 *수	안 *수 1956-04-04	울산광역시 북구 원연암1길 (연암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1-03-19